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. 12. 4 선고 2024가단87122 판결 [건물명도 및 임대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주식회사 B

2. 주식회사 C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12. 4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주식회사 B은,1)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5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432㎡를 인도하고,2) 50,217,949원과 2024. 7.

1.부터 위 선내 (가) 부분 432㎡ 인도 완료일까지 월 8,498,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나. 피고 주식회사 C는,1)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5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6, 1, 10, 11, 12, 13, 14, 15,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279.49㎡를 인도하고,2) 15,624,789원과 2024.

7. 1.부터 위 선내 (나) 부분 279.49㎡ 인도 완료일까지 월 2,723,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 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판결)

판사 이유빈

별지